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번역 : 하승수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이 조례는 많은 시민과 아동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진 것이며, 이 조례의 내용은 '아동권리조례검토연락회의'와 '아동권리조례조사연구위원회'에서, 약 2년간 200회를 넘는 회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아동과 어른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아동을 하나의 인간(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권리침해로부터 지키며, 아동이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그것을 위하여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나 이념을 정리한 전반부와 아동의 생활의 장에 따른 권리보장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보장의 방법을 규정한 후반부로 구성된다. 21세기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들이 생기있게 자라며, 자신과 타인 모두 존중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를 기원한다.

가와사키시 · 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

前文

아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간이다. 아동은 매우 소중한 가치와 존엄을 지니며, 개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인정되며, 자신이 그 자체로서 소중하기를 원한다.

아동은 권리의 전면적인 주체이다. 아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확보, 차별의 금지, 아동의 의견의 존중 등의 국제적인 원칙 하에, 그 권리를 종합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된다. 아동에 있어서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것이다.

아동은 그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풍부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 실제로 행사하는 것 등을 통하여 아동은 권리의 인식을 깊게 하고, 권리를 실현할 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힘이나 책임 등을 체화시킬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그 권리가 상호 존중되는 것이 불가결한 것이다.

아동은 어른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파트너이다. 아동은 현재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미래사회의 담당자로서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의 형성에 있어서 고유의 역할이 있음과 동시에 그것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도 사회는 아동에게 열려야 한다.

아동은 동시대를 사는 지구시민으로서 국내외의 아동과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를 깊게 하고, 공생과 평화를 염원하며, 자연을 지키고, 도시에 보다 나은 환경을 창조하는 것에 있어서 불가결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시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은 시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생을 진전시키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우리들은 아동 최우선 등의 국제적인 원칙에 따르고, 아동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평성원년 11월 2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이념에 기반 하여,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진전시킬 것임을 선언하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시 등의 책무,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가정, 보육·학교시설 및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드는 용어의 정의는 당해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에 의한다.

1. 아동 : 시민을 비롯하여 시와 관계가 있는 18세 미만의 자 기타 그들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양육·교육시설 : 아동복지법(소화 22년 법률 제164호)에 규정한 아동복지시설, 학교교육법(소화 22년 법률 제26호)에 규정한 학교, 專修학교, 각종학교 기타의 시설 중, 아동이 양육되고, 배우기 위하여 입소하고, 通所하고 통학하는 시설
3. 부모에 대신하는 보호자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수양부모(里親) 또는 보호수탁자 기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자

제3조(책무) ① 시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시책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場에 있어서, 그 권리가 보장되도록 시와 협동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양육·교육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및 직원(이하 「시설관계자」라고 한다) 가운데, 시 이외의 시설관계자는 시의 시책에 협력하고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그 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양육하는 아동 및 고용된 아동의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시의 시책에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가 등への 요청) 시는 아동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도록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市外에 있어서도 그 권리가 보장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제5조(가와사키 아동 권리의 날) ① 시민들 사이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 깊게 하기 위하여, 가와사키 아동 권리의 날을 둔다.

② 가와사키 아동 권리의 날은 11월 20일로 한다.

③ 시는 가와사키 아동권리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광범위한 시민의 참가를 요청해야 한다.

제6조(홍보) 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그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학습등への 지원 등)

① 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가운데, 아동의 권리에 대한 학습 등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는 시설관계자 및 의사, 保健婦 등 아동의 권리의 보장과 직무상 관계된 자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좀더 깊어지도록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시는 아동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자주적인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시민활동에의 지원) 시는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활동에 대하여 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과 함께,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제휴를 도모해야 한다.

제2장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제9조(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이 장에 규정하는 권리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자라고 배우고 생활하기 위해 특히 귀중한 것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10조(안심하고 생활할 권리)

아동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하여 주로 아래에서 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생명이 지켜지고 존중되는 것
- (2)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양육되는 것
- (3)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
- (4)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받지 않으며, 방치되지 않는 것
- (5) 건강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며, 성장에 어울리는 생활이 가능한 것
- (6)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제11조(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권리)

아동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개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인정되고, 인격이 존중되는 것
- (2) 자신의 생각이나 신앙을 유지하는 것
- (3)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는 것
- (4) 자신에 관한 정보가 부당하게 수집되거나 이용되지 않는 것
- (5) 아동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취급을 받지 않는 것
- (6)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휴식하는 것, 여가를 가지는 것

제12조(자신을 지키고, 또한 지켜질 권리)

아동은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모든 권리의 침해로부터 벗어나는 것
- (2)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받는 상황으로부터 보호되는 것
- (3)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담의 기회가 상담에 어울리는 분위기에서 확보되는 것
- (4) 자신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결정할 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가능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는 것
- (5)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 그 회복에 적절한 분위기의 장소가 주어지는 것

제13조(자신을 풍부하게 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권리)

아동은 그 성장에 따라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노는 것
- (2) 배우는 것
- (3) 문화예술활동에 참가하는 것
- (4) 정보를 얻는 것
- (5) 행복을 추구하는 것

제14조(스스로 결정할 권리)

아동은 자신에 관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자신에 관한 것을 연령과 성숙도에 맞게 결정하는 것
- (2) 자신에 관한 것을 결정할 때에, 적절한 지원 및 조언을 받는 것
- (3) 자신에 관한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제15조(참가할 권리)

아동은 참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자신을 표현하는 것
- (2)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는 것
- (3) 동료들 만들고, 동료와 모이는 것
- (4) 참가를 할 때에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

제16조(개별적인 필요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

아동은 그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아동 또는 그 가족의 국적,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 기타의 처한 상황을 원인 또는 이유로 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 (2) 前號의 처한 상황의 차이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가운데에 共生할 수 있는 것
- (3) 장애가 있는 아동이 존엄을 지키고, 자립하며, 사회에의 적극적인 참가가 도모되는 것
- (4) 국적, 민족, 언어 등에 있어서 소수의 입장에 있는 아동이 자신의 문화 등을 향유하고, 학습하며, 표현하는 것이 존중되는 것
- (5)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의 입수 방법, 의견표명의 방법, 참가의 방법 등에 대한 공부 및 배려가 주어지는 것

제3장 가정, 양육·교육시설 및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1절 가정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17조(부모 등에 의한 아동의 권리의 보장)

- ①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이하 「부모 등」이라 한다)는, 그 양육하는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자이다.
- ② 부모 등은 그 양육하는 아동이 권리를 행사할 때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부모 등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그 양육하는 아동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부모 등은 양육·교육시설 및 보건, 의료, 아동복지 등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동 본인의 정보를 얻는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양육의 지원) ① 부모 등은 그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시는 부모 등이 그 아동의 양육에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특히 배려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안심하고 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19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부모 등은 그 양육하는 아동에 대하여 학대 및 체벌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학대로부터의 구제 및 그 회복) ① 시는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구제 및 그 회복에 있어서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아동의 심신상황을 특히 배려하여야 한다.
- ③ 시는 학대의 조기발견 및 학대를 받은 아동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회복을 위하여 관계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양육·교육 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21조(양육·교육환경의 정비 등) ① 양육·교육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설치관리자」라 한다)는 그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도모되도록, 양육·교육시설에 있어서 아동이 충분히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 ② 前項의 환경의 정비에 있어서는 그 아동의 부모 등을 비롯한 지역의 주민과 제휴를 도모함과 함께, 양육·교육시설의 직원의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안전관리체제의 정비 등)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양육·교육시설의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는 것과 함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부모 등 지역의 주민과의 제휴를

도모하고, 안전관리의 체제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아동의 자주적인 활동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그 시설 및 설비의 정비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제23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등) ① 시설관계자는 그 아동에 대하여 학대 및 체벌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에 관한 연수 등을 실시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에 관한 상담을 그 아동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양육·교육시설에 있어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④ 시설설치관리자는 학대 및 체벌에 관한 아동의 상담을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사람,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아동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이지메의 방지 등) ① 시설관계자는 이지메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설관계자는 이지메의 방지를 위해, 아동들을 상대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이지메의 방지에 관한 연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설설치관리자는 이지메에 관한 상담을 그 아동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학교 시설에 있어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시설관계자는 이지메에 관한 아동의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사람,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아동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관계자는 이지메를 행한 아동에 대하여도 필요한 배려를 하는 바탕 위에서 적절한 대응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아동 본인에 관한 문서 등) ① 양육·교육시설에 있어서 아동 본인에 관한 문서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문서 중 아동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작성에 있어서 아동 본인 또는 그 부모 등의 의견을 구하는 등 공정한 문서의 작성에 대한 배려가 행해져야 한다.

③ 양육·교육시설에 있어서는,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아동 본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전항의 정보는 양육·학교 시설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⑤ 제1항의 문서 및 제3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아동 본인에게 제시되거나 제공되도록 문서 및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⑥ 양육·학교 시설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에, 그 아동 본인으로부터 사정, 의견 등을 청취하는 등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3절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26조(아동의 성장의 장 등으로서의 지역) 지역은 아동의 성장의 장이고, 가정, 양육·교육시설, 문화, 스포츠 시설 등과 일체가 되어 그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場인 것을 고려하여, 시는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도모되고 아동의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 및 교육환경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7조(아동의 居場所) ① 아동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인 것, 휴식하여 자신을 되찾는 것, 자유롭게 놀고 활동하는 것, 안심하고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들이 가능한 장소(이하 居場所라 한다)가 귀중한 것을 고려하여, 시는 居場所에 대한 사고방식을 보급하고 居場所의 확보 및 그 존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는 아동에 대한 거장소의 제공 등의 자주적인 활동을 행하는 시민 및 관계단체와의 제휴를 도모하고, 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8조(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활동)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활동은 아동이 풍부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라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하여, 시는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자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아동의 참가(제29조~제34조)

제29조(아동의 참가의 촉진) 시는 아동이 시정 등에 대하여 시민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양육·교육시설 기타 활동의 거점으로 되는 場에서 그 운영 등에 대하여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또는 지역에 있어서 문화, 스포츠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諸 施策에 있어서 보장하는 것이 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하여 아동의 참가를 촉진하고, 그 方策의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0조(아동 회의)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하여, 아동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가와사키시 아동회의(이하 「아동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아동회의는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한다.

③ 아동회의는 그 주체인 아동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아동의 總意로서의 의견 등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등을 존중해야 한다.

⑤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아동회의에 모든 아동의 참가가 촉진되고, 그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제31조(참가활동의 거점 만들기) 시는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들만이 자유롭게 안심하며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자치적 활동의 장려)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아동의 자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자치적인 활동에 의한 아동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양육·교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좀더 열린 양육·학교시설) 시설설치관리자는 아동, 부모, 기타 지역주민에게 좀더 열린 양육·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양육·학교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을 행하고, 그들 및 양육·교육시설의 직원들과 함께 양육·학교시설을 강화하고 상호 조화되기 위하여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4조(시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아동의 의견) 시는 아동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시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아동의 참가의 방법 등에 대하여 배려하고,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상담 및 구제(제35조)

제35조(상담 및 구제) ① 아동은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맨에 대하여,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의 침해로부터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는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맨에 의한 것 외에도, 아동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상담 또는 구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아동 및 그 권리의 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제36조·제37조)

제36조(행동계획) ① 시는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할 때에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모되기 위한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해야 한다.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행동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 시민 및 제38조에 규정한 ‘가와사키시 아동 권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37조(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의 아동에 관한 시책은 아동의 권리의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래에 드는 사항을 배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1)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 하는 것
- (2) 교육, 복지 의료 등과의 제휴 및 조정이 도모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것
- (3) 부모 등, 시설관계자, 기타 시민과의 제휴를 통하여 하나 하나의 아동을 지원하는 것

제7장 아동 권리의 보장상황의 검증(제38조~제40조)

제38조(권리위원회) ①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위원회(이하 「권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리위원회는 시장 기타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아동에 관한 시책에 있어서의 아동 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③ 권리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인권, 교육, 복지 등 아동의 권리에 관계된 분야에 있어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및 시민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⑥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 ⑦ 제4항의 위원 외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위원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 ⑧ 위원 및 임시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같다.
- ⑨ 전 각 항에서 정한 것 외에, 권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9조(검증) ① 권리위원회는 前條 제2항의 자문이 있는 때에는, 시장 기타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평가 등을 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한다.

-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권리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③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④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구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얻어지도록 그 방법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 ⑤ 권리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의 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 ⑥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심의에 의하여 얻어진 검증결과를 시장 기타 집행기관에게 답신해야 한다.

제40조(답신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권리위원회로부터의 답신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② 시장은 前條의 규정에 의한 답신 및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8장 雜則(제41조)

제41조(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 기타 집행기관이 정한다.